

『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용자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청년 구직촉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19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

※ 「청년기본법」 (‘20. 1. 9 국회 본회의 의결) ※ 8월 시행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4. 3. ~ 4. 10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청년 구직활동 촉진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 최근 청년취업난이 심각해지며 청년들이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시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함.
- 다만,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수반될 재원의 조달계획과 재정의 지속가능성, (위탁)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